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제품, 정부가 먼저 구매합니다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매뉴얼

신규 업체용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2023.04.

1. 혁신시제품 지정 절차

2. 사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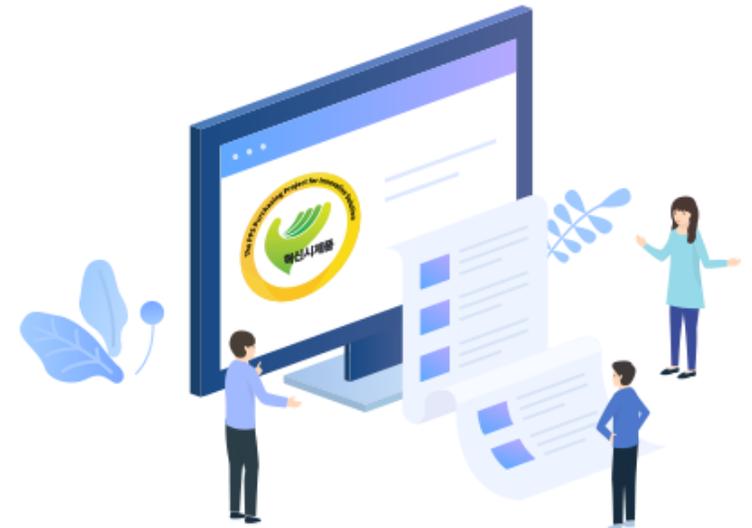
- ①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 등록
- ② 물품식별번호 등록

3. 온라인 신청

- ① 혁신장터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②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
- ③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 ④ 신청 내역 조회 및 보완요청 제출

4. 혁신성평가 결과 조회 및 추가서류 제출

- ① 혁신성평가 심사 결과 조회
- ② 혁신성평가 합격업체 추가 서류 제출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 세부물품 분류번호 제조 등록
- 물품식별번호 등록

-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 및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 공공성·혁신성 평가 통과 업체에 한해 추가서류 제출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수요 발굴 위원회) 진행
- 최종합격 시 혁신장터 제품 등록, 시범구매 등에 참여 가능



2. 사전 절차

2-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2-2. 물품식별번호 등록

나라장터 국가중합전자조달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통합검색 검색

·사이트맵·원격지원 나라장터 관련사이트

입찰정보 수요기관 조달업체 나라장터 소개 신규이용자 등록 인증서 등록

입찰광고검색 조달청계약요청현황 계약현황 견적요청검색

07:00 ~ 20:00 사이에는 검색기간을 공고게시일자 최대 6개월, 개찰일자 최대 6개월 까지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라장터 인증서 로그인 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 LOGIN

구매(발주)기관

① 수요기관 이용자 ② 민간수요자 이용자

조달업체/비축물자 이용업체

③ 조달업체 이용자 ④ 비축물자 이용업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해야 혁신장터 내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1588-0800

① 신규이용자 등록 클릭 → ② 조달업체 이용자 클릭 →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공지사항	분류변경공지사항	법령지침자료실	FAQ
• [알림] 재해복구 훈련에 따른 서비스 중단 안내 (10.28 1)			2022/10/27
• [알림] 상품정보 시스템 작업에 따른 서비스 중단 안내(08/2			2022/08/23
• [알림] 융복합상품 등록업무 세부처리기준			2022/03/22
• [알림] 목록화지침(훈령) 개정에 따라 '물품관리용' 품목등록은			2022/01/05
• [알림] 목록화지침(훈령) 개정 시행 안내			2021/12/22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 없이도 지정신청은 가능. 단, 혁신성평가 이후 절차 진행이 어려우므로 지정신청과 병행하여 등록 필요

목록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www.g2b.go.kr:8053>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① 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 → ② **알기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내용 확인 → ③ 목록화 요청 주요서비스 →
- ④ **품목등록** 클릭해서 **식별번호**를 신청



주요 연락처 안내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 조달콜센터 (1588-0800), 조달청 등록팀 (070-4056-7507, 7189, 7162 각 지방 조달청 경영관리과)
- 세부물품분류번호 부여, 물품식별번호 부여 관련 : 조달콜센터 (1588-0800), 물품관리과 (070-4056-6463, 7182, 7271, 7257)
- 혁신장터 상품등록 관련 (070-4056-7672)
- 혁신장터 시스템 관련 (042-724-0598, 0593, 059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세부물품분류번호 제조등록

- 혁신시제품 신청 제품의 세부물품분류번호는 반드시 **제조**로 되어 있어야만 해당 사업에 신청 가능
(기술만 있고 제조 공장이 없는 추진기업(신청업체)인 경우 협업으로 신청 가능 - 공고서 '신청자격' 참고)
- 신청하려는 제품이 시스템 등 여러 품목이 구성되는 경우 **하나의 세부품명**으로 통합된 세부품명으로 등록해야 함 (제품과 서비스가 함께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
※ 품명등록 과정 중 융·복합품명 등록하는 경우(물품관리과 070-4056-6399), 비교란에 '조달청 혁신시제품 신청용'이란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② 물품식별번호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선택하신 세부물품분류번호가 신청 상품과 일치해야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 품목등록 과정 중 **활용구분에 '조달청 혁신시제품 신청용'**으로 선택
- 단, 신청하려는 제품의 식별번호를 이미 부여 받은 업체는 해당 식별번호를 활용하여 지정신청 진행

③ 물품식별번호 부여를 못 받은 경우

- 혁신성 평가 통과 후 **2차 서류 제출시까지**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한 제조물품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접수 시 물품식별번호 신청 중이라 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매뉴얼 P18** 참고하여 신청해주세요.



3. 온라인 신청

- 3-1. 혁신장터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3-2.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
- 3-3.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 3-4. 신청 내역 조회 및 보완요청 제출

혁신장터 조달청 종합쇼핑몰 벤처나라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 이용장터 공지사항 로그인 회원가입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

전체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혁신제품 진용을 바로가기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FT1(우수연구제품), FT2(혁신시제품), FT3(혁신성·공공성 인증제품)이 있습니다.

혁신제품이란?

-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민(공통) 바로가기 >	혁신기업 바로가기 >	수요기관 바로가기 >
----------------------	---------------------------	--------------------

개인정보처리방침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 070-4056-7664, 7683, 7420, 7217, 혁신제품 시범사용(수요매칭) : 7525



혁신장터 사이트 <http://ppi.g2b.go.kr:8914>로 접속해주세요.
하단의 '혁신기업(바로가기)' 화면 클릭해 주세요.



3-1. 혁신장터 사이트 접속 / 로그인

1. 로그인 클릭

2. 인증서 선택

사용자	구분	만료일	발급자
koneps기관21	사업자(범용)	2020년 09월 18일	한국정보인증
koneps기관22	사업자(범용)	2020년 09월 18일	한국정보인증
koneps업체 36	사업자(범용)	2020년 09월 18일	한국정보인증
koneps업체 37	사업자(범용)	2020년 09월 18일	한국정보인증

3. 이용약관 동의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관리하는 "혁신장터"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혁신제품 전용물"이란 "혁신장터" 내(내)의 혁신제품 전용 온라인 제품물을 말합니다.
2. "수요공급 커뮤니케이션"이란 "혁신장터" 내(내) 혁신수요 및 공급 정보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3.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관 중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혁신장터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 "이용업체"란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관리 규정」(이하 "혁신장터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혁신장터를 이용하는 조달업체를 말합니다.
5. "이용자"란 수요공급 커뮤니케이션 수요제기 또는 의견등록 기능 등을 통해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조회하는 기법, 단체,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6. "혁신장터 관리자"란 혁신장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7.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에서 조달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말합니다.

혁신제품 전용물 이용약관동의

취소 확인



혁신장터 사이트 <http://ppi.g2b.go.kr:8914>로 접속해주세요.

인증서 로그인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

- ① 상단 로그인 클릭 → ② 인증서 로그인 클릭 → ③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시 등록된 인증서 선택 로그인
→ ④ 이용약관 동의 (별도 회원 가입 절차는 없으나, 이용업체는 **최초 방문 시 이용약관에 동의가 필요**)

3-2.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 ①

혁신시제품 지정

혁신시제품 지정

번호	상태	제안구분	년도/차수	제목	신청기간	상태	등록일자
12	신청	수요자제안형	2021년도/4차	2021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수요자제안형2차)	2021-07-08 - 2021-08-18	신청	2021-07-08
11	백업	공급자제안형	2021년도/3차	2021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공급자 제안형 2차)	2021-05-03 - 2021-05-31	백업	2021-05-03
10	백업	수요자제안형	2021년도/2차	2021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수요자제안형1차)	2021-01-28 - 2021-03-11	백업	2021-01-28



혁신장터에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상단 메뉴 '혁신시제품 지정'을 통해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상단의 '혁신시제품 지정' 메뉴로 커서 이동 → ② 4번째 [업체]지정 신청 공고 클릭 →
진행 중인 공고 제목 클릭, 세부내용 확인

3-2.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 ②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목록

• 상태: 전체 | • 제안구분: 전체 | • 사업년도/차수: 전체

• 총 27건의 조회 결과가 있습니다. (1/3페이지)

번호	상태	제안구분	년도/차수	제목	신청기간	상태	등록일자
27	진행	공급자제안형	2023년도/2차	(스카우터)'23년 1차 스카우터 최종 추천 제품 지정 신청 공고 - 데모데이 합격업체 해당	2023-02-03 ~ 2023-12-31	신청	2023-02-03
26	마감	공급자제안형	2023년도/1차	2023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공급자제안형 1차)	2023-01-16 ~ 2023-01-16	마감	2023-01-16
25	마감	수요자제안형	2022년도/9차	2022년 혁신시제품 정정 공고(공공수요 속상자원-인큐베이팅 2차)	2022-10-21 ~ 2022-11-18	마감	2022-10-21
24	마감	공급자제안형	2022년도/8차	2022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공급자제안형 3차)	2022-08-30 ~ 2022-09-29	마감	2022-08-30
23	마감	수요자제안형	2022년도/7차	2022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정정공고(수요자제안형 2차)	2022-08-19 ~ 2022-09-29	마감	2022-08-19

공고 상세

4 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공급자 제안형 2차)

작성자: CZ031010G0001 | 작성일: 2021-05-11

지원분야: 국민생활(건강), 국민생활(교육), 국민생활(문화), 국민생활(복지), 국민생활(안전), 국민생활(차안), 국민생활(환경), 드론, 로봇,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산업, 인공지능(AI), 핀테크

신청기간: 2021-05-03 ~ 2021-05-31 18:00

첨부파일

- 2021년도 혁신시제품_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2차).hwp (840 KB) [다운로드](#)
- [별첨1] 혁신시제품 제안서(공급자제안형).hwp (58 KB) [다운로드](#)
- [별첨2-1]제품규격서(일반제품)_20210115.hwp (1156 KB) [다운로드](#)
- [별첨2-2]제품규격서(소프트웨어제품)_20210115.hwp (288 KB) [다운로드](#)
- [별첨3] 약정서.hwp (14 KB) [다운로드](#)
- [별첨4] 영업 승인 신청서.hwp (18 KB) [다운로드](#)
- [별지 제3호서식(제11조제7항) 기술·성능 비교표(수정본).hwp (14 KB) [다운로드](#)
- [별첨6] 신규업체_혁신시제품_온라인신청_매뉴얼_ver.6.pdf (1959 KB) [다운로드](#)
- [별첨7]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안(조달청 고시 제2021-10... (2318 KB) [다운로드](#)

5 목록



공고목록의 상태 및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상태가 “마감”으로 표시되는 공고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①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공고 목록 → ② 공고 상태 확인 → ③ 제목 클릭 →
④ 공고 내용 확인 (지정공고 및 매뉴얼 확인 필수) → ⑤ 신청

3-3.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①

2023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공급자제한형 1차)

작성일자: 2023-01-16

지원분야
국민생활(지연), 국민생활(문화), 국민생활(교육), 국민생활(건강), 인공지능(AI), 로봇, 핀테크,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드론, 국민생활(안전), 국민생활(복지), 국민생활(환경), 탄소중립,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제품, 재난안전제품, 모듈러

신청기간: 2023-01-16 ~ 2023-02-13

수정 보완기간: 2023-01-16 ~ 2023-02-28

혁신 시제품평가: 2023-02-14 ~ 2023-03-14

1차 발표기간: 2023-03-15

제3차 이의신청기간: 2023-03-15 ~ 2023-03-21

추가서류 제출기간: 2023-03-15 ~ 9999-10-29

첨부파일

- [공고서] 2023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한형 1차).pdf (662 KB) [다운로드](#)
- [별첨1] 혁신시제품 제안서(공급자제한형) (1).hwp (57 KB) [다운로드](#)
- [별첨2-1] 제품규격서(일반제품)_20210115.hwp (1156 KB) [다운로드](#)
- [별첨2-2] 제품규격서(소프트웨어제품)_20210115.hwp (289 KB) [다운로드](#)
- [별첨3] 약정서.hwp (14 KB) [다운로드](#)
- [별첨4] 협업 승인 신청서.hwp (18 KB) [다운로드](#)
- [별첨5] 기술·성능 비교표(수정본).hwp (14 KB) [다운로드](#)
- [별첨6] 신규업체 혁신시제품 온라인신청 메뉴얼.pdf (2157 KB) [다운로드](#)
- [별첨7]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전문)_제2021-40호(211... (2340 KB) [다운로드](#)
- [별첨8] 혁신시제품 FAQ(20220225).hwp (466 KB) [다운로드](#)

신청자격검증

신청이력이 5건 있습니다. (최근 신청건 5건이내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세 조회는 신청서 조회 메뉴를 이용하세요.)

번호	공고년도	공고차수	신청제목	제출일시	신청서상태	최종신청여부
1	2020	15	혁신 공기청정기	2020-02-28 13:09:41	제출	-
2	2020	15	ai인공지능 농부	2020-02-28 13:21:10	승인	-
3	2020	15	혁신명	2020-02-28 13:33:17	제출	-
4	2020	14	혁신명 테스트	2020-02-27 17:04:35	승인	-
5	2020	14	혁신 토목 공사업	2020-02-27 14:37:16	승인	신청

부정당 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입니다.

신청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 제품(식별번호 기준) 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기존 신청 이력을 확인해주세요. 동일제품(물품식별번호)으로 혁신시제품 평가에서 4회 탈락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21. 1. 1.부터 시행 / 「혁신제품구매운영규정」 제17조 7호)

- ① 공고 내용 확인 후 신청 클릭 → ② 신청자격검증 팝업 오픈 → ③ 과거 신청이력 확인 → ④ 기업정보 확인 (수정은 나라장터 통해 가능) → ⑤ 신청 버튼 클릭



이용약관

혁신 시제품 신청 서류 제출 신뢰 서약서

• 당사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의하여 혁신 시제품 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포함)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적용기술과 동등이상으로 규격 작성 되었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 시제품 지정이후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시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거래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혁신 시제품 정보 공개 동의서

당 사에서 요청한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등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귀 청 홈페이지 공개 및 필요시 이해당사자가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에 동의는 필수과정으로 '동의합니다' 체크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청서 등록

신청기업정보

1 신청기업	업체명(국문)	e발주추가1	사업자 등록번호	9992199995		
	업체명(영문)	aaa	업종/업태	토목공사업		
	주소(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aaa				
	주소(공장)	-				
	기업형태	1				
	대표자	외국인	홈페이지	11111111		
	전화	111-1111-1111	내외국인구분	-		
	휴대전화	010-0000-0000	여성기업구분			
2 연구개발조직	*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input type="radio"/> 보유기술개발 전담조직 <input type="radio"/> 실험실 형태 조직 <input type="radio"/> 외부기관 의뢰·활용 <input type="radio"/> 기타(공인 기업부설연구소)				
	기술인력수(명)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기술사)	기타
3 사업영역	<input type="text" value="0"/>					
	* 사업영역					
해당 업체의 주력 분야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업에 입력된 **신청기업정보** 및 **사업담당자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정보**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기업 내용 확인 → ② 연구 개발 조직 현황 기재 → ③ 사업영역 작성 (해당 업체의 주력 분야 기재)

※ 사업영역 예시 : 미세먼지, 드론, 핀테크 분야 등



	구분	전전 연도(2년전)	직년 연도(1년전)	당해 연도	최근 3년(합)
1 업체의 해당년도 전체 매출 규모	매출액(백만원)	0	0	0	0
	성명	업체담당자1		E-mail	a@g2b.go.kr
2 사업담당자	연락처 (유선)	042-481-1111		연락처 (휴대전화)	010-111-2222

* 업체정보, 업체대표자정보, 업체담당자정보 수정은 나라장터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해당년도 전체 매출 규모는 해당년도 모든 매출 정보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제품 매출에 대해서는 추후 작성). 신청기업정보는 [별지13] 제안서 양식의 3P 신청자 정보 요약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서류 승인이 됩니다.

① 업체의 해당년도 전체 매출 규모 (해당년도 모든 매출 정보) → ② 사업담당자 정보 확인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오므로 혁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로 변경필요. 추후 서류 보완 요청 등 업무 진행 시 해당 연락처로 연락)

3-3.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⑤

혁신제안 요약

1 혁신명	신청하시려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분야	-선택-
* 상품분류번호	<p>※상품분류번호 조회 및 등록 방법 -귀사가 부여 받는 상품분류번호만 검색이 됩니다. (협업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업을 선택한 뒤에 협업 업체의 번호로 조회) -신청분야별 하나의 세부품명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성품이 다수로 구성된 경우 복합품명 등록 절차를 통해 하나의 명으로 묶은 후 혁신시제품으로 신청)</p> <p><input checked="" type="radio"/> 단일 <input type="radio"/> 협업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input type="button" value="초기화"/></p>
* 품목유형	<input checked="" type="radio"/> 제품 <input type="radio"/> 제품 + 서비스

4

• 사업자번호: 1108189543 • 상품식별번호: 238388 • 상품식별명: 입력

선택	순번	상품분류번호	상품분류명	상품식별번호	상품식별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3910169901	LED램프	23838874	LED램프, 비케이트크놀로지, HSS1RFT-W075-4000, 75W, 컨버터외장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3910169901	LED램프	23838873	LED램프, 비케이트크놀로지, HSS1RFT-W060-4000, 60W, 컨버터외장형
<input type="checkbox"/>	2	3910169901	LED램프	23838872	LED램프, 비케이트크놀로지, HSS1RFT-W050-4000, 50W, 컨버터외장형

<p>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 (AI)</p>	<p>국민생활_안전 국민생활_환경 국민생활_건강 국민생활_복지 국민생활_교육 국민생활_문화 국민생활_치안 탄소중립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제품 재난안전제품</p>
---	--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 제품(식별번호 기준) 인 경우, 동일 식별번호로 혁신시제품 평가에서 4회 탈락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심사대상에서 제외 -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제17조 제 4호, 제 6호, 제7호)
식별번호를 부여 받았다면 신청하고자 하는 모든 식별번호를 검색, 체크해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번호 + 식별번호 앞2자리로 조회)

- ① 신청 제품명 작성 → ② 신청 분야 선택 (분야 중 1개만 선택 가능, 업체가 직접 선택) → ③ 단일(단독) 또는 협업 체크 후 조회 버튼 클릭 → ④ 사업자번호 또는 상품식별번호로 조회 (MAS, 우수조달물품인 식별번호의 경우 체크 안 됨)

3-3.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⑤



상품분류번호 조회 및 등록 방법

- 본인이 부여 받은 상품분류번호만 검색되며, 신청 분야별 1개의 세부품명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품이 다수로 구성된 경우, 복합 품명 등록 절차를 통해 1개의 세부품명으로 묶은 후 혁신제품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세부물품분류번호 부여, 물품식별번호 부여 관련 : 조달콜센터 (1588-0800), 물품관리과 (070-4056-7271, 7257, 6463)
- **상품분류번호 조회할 때 다수의 식별번호 검색하려면 사업자번호 10자리 + 식별번호 8자리 중 앞에 2자리 입력해 검색하면 해당 되는 식별번호 모두 검색 가능**

Q. 식별번호 부여 전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

① 지정신청과 병행하여 제안제품(세부품명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 필요

- ※ 물품식별번호 등록 후 신청이 원칙이나, **미등록업체도 신청은 가능** (단, 이 경우 혁신성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평가 이후 절차 진행이 어려움)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한 제조물품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 ※ 접수 시 물품식별번호 신청 중이라 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아래를 참고해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협업으로 진행 시 참여기업의 사업자번호와 식별번호로 검색 가능하며, 검색이 안 되는 경우 ③의 식별번호 등록 전 방법으로 신청 가능

③ 물품식별번호 등록 전이라면 이렇게 신청 가능합니다!

※ **협업** 체크 → 사업자번호 (9992111199), 상품식별번호 (23197254) 입력 후 조회 → 기타미분류가구 **체크** → 입력

혁신제안 요약

* 혁신명	신청하시려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분야	-선택-
* 상품분류번호	※상품분류번호 조회 및 등록 방법 -귀사가 부여 받은 상품분류번호만 검색이 됩니다. (협업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업을 선택한 뒤에 협업 업체의 번호로 조회) -신청분야별 하나의 세부품명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성품이 다수로 구성된 경우 복합품명 등록 절차를 통해 하나의 세부품명으로 묶은 후 혁신시제품으로 신청)

단일
 협업

코드검색

사업자번호	9992111199	상품식별번호	23197254	상품식별명	입력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	------------	--------	----------	-------	----	-----------------------------------

선택	순번	상품분류번호	상품분류명	상품식별번호	상품식별명
<input type="checkbox"/>	1	5610159501	기타미분류가구	23197254	기타미분류가구, 조달나라, 조달청벤치나리규격



1 * 품목유형 제품 제품 + 서비스

* 적용기술 조회

3 * 혁신개요

4 * 활동분야(주요용도)

5 * 예상 수요기관

2 →

코드 다운로드 ↓

분류	선택
1차 분류	선택 ▼
2차 분류	선택 ▼
3차 분류	선택 ▼



적용기술에 해당하는 코드분류는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의 산업기술분류표(별표 3)의 양식을 참고해 선택해주세요.
구매운영규정은 혁신장터 지정 공고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자료 중 별첨7)

① 품목유형 선택 → ② 적용기술 조회 → ③ 혁신개요 작성 → ④ 활동분야 작성 → ⑤ 예상 수요기관 작성

※ 예상 수요기관 : 제안 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재



신청 제품의 매출액	구분	17년	18년	19년	최근 3년(합)
1	매출액(백만원)	0	0	0	0
해당품목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건)	특허등록 및 실용신안	0	0	0	0
2	의장	0	0	0	0
3	상표	0	0	0	0
4	기타	0	0	0	0
* 정부 R&D 지원여부	작성예시: R&D지원사업/지원부처/완료여부/지원기간/평가 결과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완성도(TRL)	<input type="radio"/> TRL 7단계 <input type="radio"/> TRL 8단계 <input type="radio"/> TRL 9단계 * TRL 단계 참고 - 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ex)실험실조건, 시험성적서(자체, 공인) 존재 - TRL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ex)현장 적용,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 TRL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 (시장출시 직전단계) ex)양산 준비 완료, 법적 인증 완료 등				
5	* 유사기술현황	<input type="radio"/> 국내 및 외국 없음 <input type="radio"/> 국외존재 <input type="radio"/> 국내존재 <input type="radio"/> 파악한 적 없음			



신청제품 매출액 : 신청제품매출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제안서 양식 (4p) 제안품목 매출액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서류 승인 가능합니다.
 정부 R&D 지원여부 입력 예시 : R&D 지원 사업명 / 지원 부처 / 완료 여부 / 지원 기간 / 평가 결과
 정부 R&D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반드시 '없음'으로 기재해주세요.

- ① 신청 제품의 매출액 작성 → ② 신청제품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하단의 특허검증 단계 통해 자동입력됨 - 21p 확인)
 → ③ 정부 R&D 지원 있는 경우 작성 → ④ 기술 완성도 체크(예시 확인 후 직접 선택) → ⑤ 유사기술현황 체크



혁신제안 첨부파일

1	<p>규제 샌드박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특례 통과 인정 범위: 임시허가, 실증특례 *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를 통과한 제품인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p>※ 최대 10M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파일업로드</p>
2	<p>특허·실용신안 등록증 등 * 공동권리인 경우 약정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증(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모두 압축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는 모든 특허·실용실안은 이후 특허적용확인서를 받아야 하니 신청 제품에 적용된 것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번호 (예시) 제12-3456789호, 123456789000000을 123456789 형식으로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p>등록번호입력 권리권자입력 검증 삭제</p> <p>※ 각 첨부파일 단 최대 10M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파일업로드</p>
3	<p>혁신 시제품 제안서</p> <p>양식 다운로드</p> <p>※ 최대 10M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파일업로드</p>
4	<p>혁신 시제품 규격서</p> <p>양식 다운로드</p> <p>※ 최대 10M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파일업로드</p>



신청제품이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를 통과한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R&D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반드시 '없음'으로 기재해주세요.

- ① 규제샌드박스인 경우 작성 → ② 특허, 실용신안 등록번호 검증 (관련 서류 일체 파일첨부 - 22~23p 참고) → ③ 제안서 작성 및 첨부 (※ 제안서의 '혁신성-제품탁월성-적용기술'에서 핵심기술은 1개 이상 적용하여야 함.) → ④ 규격서 작성 및 첨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작성 방법

- 특허 등록 및 실용신안은 신청서 하단 **혁신제안 첨부파일에서 특허 검증을 통해 자동 입력** 됩니다. (수동 입력 불가)
- 검증은 해당 등록번호와 권리권자 입력 후 검증 버튼을 눌러야 하며 1건 씩만 등록 가능합니다.
- 추후 특허적용확인서를 받아 확인하므로 반드시 신청하려는 제품에 대해 적용된 것만 입력해주세요.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인 경우만 특허(실용실안) 출원 등록 가능

Q.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은 이렇게 해요 !

- ① 등록번호, 권리자명 입력 → ② 검증 버튼 클릭 → ③ 검증 완료 알림 확인(다음페이지에 안내) → ④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에 자동 기재 → ⑤ 확인 → ⑥ 검증 받은 내용에 대한 등록증 파일 첨부 → ⑦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여러 개인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 등록 및 첨부파일 업로드 가능

※ 검증버튼을 눌러 확인한 특허, 실용신안 수와 첨부파일의 숫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특허인 경우 **특허증, 등록원부, 등록공보 모두**, 실용신안인 경우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술이전 협약서 모두** 를 1개 zip 파일로 압축해 첨부

※ 공동 권리자로 인한 추가 서류는 해당 특허 파일과 같이 압축하여 첨부

*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등
* 공동관리인 경우 약정서

1 등록번호입력 권리권자입력 2 검증 삭제

※ 각 첨부파일 단 최대 10M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파일업로드

추가

1. 특허 등록번호 입력
10-123456 인 경우, **10123456** 으로만 입력

2. 실용신안 등록번호 입력
출원번호 10-2020-9876543 인 경우,
109876543 으로 입력

* 특허증(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모두 압축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실용신한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는 모든 특허·실용실안은 이후 특허적용확인서를 받아야 하니 **신청 제품에 적용된 것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번호 (예시) 제12-3456789호, 123456789000000을 123456789 형식으로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작성 방법

- 특허 등록 및 실용신안은 신청서 하단 **혁신제안 첨부파일에서 특허 검증**을 통해 **자동 입력** 됩니다. (수동 입력 불가)
- 검증은 해당 등록번호와 권리권자 입력 후 검증 버튼을 눌러야 하며 1건씩만 등록 가능합니다.
- 추후 특허적용확인서를 받아 확인하므로 반드시 신청하려는 제품에 적용된 지재권만 입력해주세요.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인 경우만 특허(실용실안) 출원 등록 가능**

Q.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번호 검증 메시지

※ 특허 및 실용실안 등록번호 입력 후 화면의 검증 버튼 클릭 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노출됩니다.
메시지 확인 후 파일 첨부 및 오류를 확인해주세요.

1) 검증 완료 시 : 확인되었습니다.

※ 완료 시 **특허 등록증 파일(특허증, 특허원부, 특허공보를 zip 파일로 묶어 1개 파일로 등록)**을 첨부해주세요.

2) 이미 등록된 특허번호 : 중복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등
* 공동관리인 경우 약정서

* 특허증(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모두 압축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관리자인 경우 약정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하는 모든 특허·실용실안은 이후 특허적용확인서를 받아야 하니 **신청 제품에 적용된 것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번호 (예시) 제12-3456789호, 123456789000000을 123456789 형식으로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입력 권리권자입력 **검증** 삭제

추가

※ 각 첨부파일 단 최대 10M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파일업로드

검증 확인 시

웹 페이지 메시지 X

! 확인 되었습니다.

확인

등록번호 중복 신청 시

웹 페이지 메시지 X

! 중복된 데이터가 존재 합니다.

확인



1 협업 관련 서류	* 협업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제출 - 세부품명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2에 따른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또는 협업승인신청서 제출 - 일반 제품인 경우: 협업승인신청서 제출 ※ 최대 10M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파일업로드 </div>
2 기술·성능 비교표	* 신청하는 제품과 동일 세부품명(제품군)으로 기 지정 및 계약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지정 및 계약 사항 기준 : 혁신제품, 다수공급자 계약, 우수조달 물품 계약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1조 7항 참고 ※ 최대 10M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파일업로드 </div>

3
임시저장
제출
목록



- * 협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협업승인신청서 또는 협업 기업 선정 확인서를 꼭 제출해주세요.
- * 기술성능비교표는 이전에 **혁신제품, MAS,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물품** 등으로 계약된 **동일 세부품명이 있는 경우 제출**

- ① 협업 관련 서류 첨부(협업인 경우) → ② 기술·성능비교표 첨부 (기술·성능 비교표와 계약 당시 규격서 같이 첨부) →
- ③ 내용 확인 후 제출버튼 클릭 (반드시 지정신청 마감일 6시 이전에 '제출' 버튼으로 제출해야 정상 제출 건으로 인정)

3-4. 신청 내역 조회 및 보완요청 제출 ①




제출된 신청 내역은 혁신시제품 지정 [업체]지정 신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상태 항목에 진행 상태가 표기되며, 신청 제목을 클릭해 보완 요청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혁신장터 로그인 → 상단의 ‘혁신시제품 지정’ 메뉴 클릭 → ① 왼쪽메뉴의 [업체]지정 신청 조회 – ② 신청서 조회 → ③ 신청 내역 확인 → ④ 제목 클릭 해 신청 내용 상세 확인 가능



혁신시제품

혁신 시제품이란? ▾

공급자 신청공고

공급자 합격발표 ▾

공급자 지정신청 조회 ▾

- 신청서 조회
- 테스트 요청 조회
- 납품 이력 조회

규격검토 제출

▶ 혁신시제품 > 공급자 지정신청 조회 > 신청서 조회

신청서 상세

혁신 시제품 사업 신청서 진행상황

사업년도/차수	2021년도/1차		
신청사업명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test 1		
처리상태	보완요청		
보완요청항목	신청서,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혁신 시제품 규격서		
보완요청일자	2021-01-04	보완마감일자	9999-12-31
보완요청사유	<p>■ 보완 기간 보완사항은 1.10(목) 18:00까지 수정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p> <p>■ 보완 미제출시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p> <p>■ 보완요청사항 (반드시 모든 보완사항을 수정하신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하신 특허의 특허증(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모두 압축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규격서 하단부에 작성하신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에 기재하신 특허는 증빙자료로 특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모두 압축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p>		

신청서 상세보기
보완이력조회
평가결과조회
추가서류제출

신청기업정보

업체명(국문)	e발주주가1	사업자 등록번호	9992199995
업체명(영문)	aaa	업종	토목공사업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보완 사유를 확인 한 뒤 보완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정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완 요구 기한까지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지정신청 조회 → 신청서 조회 → 신청 제목 클릭 → 신청 내역 상세 확인 → ① 보완요청 사유 확인



4. 혁신시제품 평가 결과 조회 및 추가서류 제출

4-1. 혁신시제품 평가 심사 결과 조회

4-2. 혁신시제품 평가 합격업체 추가 서류 제출

4-1. 혁신시제품 평가 심사 결과 조회 ①

3 제목 2021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수요자제안형 1차) 혁신성 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안내

작성일자 2021-04-09

2021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수요자제안형 1차) (조달청 공고 제2021- 제19호, 2021.1.28)호 관련 혁신성 평가 결과와 제 3차 의견수렴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자들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혁신성 평가 결과 조회 안내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업체 : 혁신성 평가 결과 조회

혁신장터 로그인 → 혁신시제품 지정 → 우측하단 사업진행현황 → 신청제목 클릭 → 평가결과조회 탭 → 평가결과 상세조회 클릭

- 그 외 : 혁신성평가 합격 확인

혁신장터 접속 (로그인 불필요) → 혁신시제품 → 우측 합격업체목록(또는 합격발표) → 1차합격발표 탭 (또는 1차 합격) → 사업년도/차수를 2021/2로 선택 후 검색
* 목록이 안나오는 경우 검색 버튼을 한번만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2. 제 3차 의견 수렴 방법 안내

- 의견수렴기간 : 2021.04.09. ~ 2021.04.19.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의견제출 시 이해관계인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신청제품과 동일, 유사한 업종 등록 등으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

- 방 법 : 혁신장터 접속 (로그인 불필요) → 혁신시제품 → 우측 합격업체목록(또는 합격발표) → 1차합격발표 탭 (또는 1차 합격) → 사업년도/차수를 2021/2로 선택 후 검색 → 이의신청. 끝.



혁신장터 혁신시제품 공지사항에 혁신시제품 평가 결과를 공지합니다.
합격업체에 대한 제3차 의견수렴 기간이 고지됩니다.

혁신장터 → ① 혁신시제품 지정 메뉴 클릭 → ② 공지사항 클릭 → ③ 혁신시제품 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안내 확인 가능 (합격업체 목록 배너 클릭, 1차 합격 여부 확인 가능)

4-1. 혁신시제품 평가 심사 결과 조회 ②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조회

혁신시제품 지정test

평가결과조회

평가결과상세조회



평가결과는 공지사항에 **기재된 평가결과 공개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성 평가에서 떨어진 경우 혁신성 평가 진행 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제14조 제3항 참고)

혁신장터 로그인 → 혁신시제품 지정 메뉴 클릭 → ① 좌측 지정 신청 조회(신청서 조회) → ② 신청 제목 클릭 → ③ 평가결과조회 탭 클릭 → ④ 평가결과 상세조회 클릭



4-2. 혁신시제품 평가 합격업체 추가 서류 제출

혁신시제품 사업 신청서 진행상황

사업년도/차수	2021년도/1차
신청사업명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test 1
처리상태	승인

신청서 상세보기 보완이력조회 평가결과조회 **추가서류제출**

추가서류제출 상세

혁신시제품 사업 신청서 진행상황

사업년도/차수	2022년도/31차
신청사업명	20221028 테스트
처리상태	1차 합격

신청서 상세보기	보완이력조회	평가결과조회	추가서류제출	규격서 변경 서류 제출
2차서류 증빙자료	특허적용확인서	제품규격서		

추가서류제출

제출되는 증빙자료의 모든 페이지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초당청 입찰참가자격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이를 스캔하여 제출

2차서류 증빙자료

2차서류 제출요약서 *	찾아보기
실태조사서 및 기업면담서 *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배 이내 또는 제품 출시 후 1년 이내 근거 자료 매출 증빙자료 기준일 <p>※ 최초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발행 이후 부터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p>	
매출원장 *	* 신청 제품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역은 매출원장에 별도 표기하여 제출 찾아보기
시험성적서 *	찾아보기
세금계산서	* 매출 증빙자료 기준일 이후에 신청 제품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만 스캔하여 첨부 찾아보기 삭제

4 제출



혁신성평가에 합격한 업체는 최종 지정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혁신성평가 합격 업체에게 별도 안내되는 안내문 참고하세요.

- ① 추가서류제출 클릭 → ② 추가서류 설명자료 및 현장실태조사서 다운로드 → ③ 해당 서류 확인 및 증빙서류 등 작성 및 첨부(단계별 진행 필요 : 2차 서류 증빙자료 제출후, 특허적용확인서, 제품규격서 메뉴도 클릭하여 단계별 첨부) → ④ 제출 버튼 클릭